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9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①. 94. 6. 29일까지 관광지조성계획 승인권은 교통부장관으로.
- 관광지조성계획(변경)승인 신청권은 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었으나.
- ②. 94. 6. 30일자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
되므로서 " 승인권자와 신청권자가 동일인"이 되는 모순이 있으므로.
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
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
관광지조성계획(변경)승인 신청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(변경승인) 신청

□ 근거법령

- 관광진흥법 제24조 제1항
- 동법시행령 제20조, 제41조 제1항 12호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1 권한 위임 사무중 관광과 소관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

분 야 별	일련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관 광 과	7	관광지 조성계획의승인(변경승인) 신청	관광진흥법 제24조 제1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.구조문대비표

(별 표)

권 한 위 임 사 무

분 야 별	일련번호	현 행		개 정(안)	
		사 무 명	근거법령	사 무 명	근거법령
관 광 과	7	(신 설)		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(변경승인)신청	관광진흥 법제24조 제1항

관 계 법 령 발 취

- 지방자치법 1988. 4. 6
법률 제4004호 전문개정

제95조(사무의위임등)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가 정한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,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수 있다.

- 관광진흥법 1993. 12. 27
법률 제4645호 일부개정

제24조(조성계획의수립등)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(경미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- 관광진흥법 시행령 1994. 6. 30
대통령 제14310호 일부개정

제20조(조성계획승인신청)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광지등의 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41조(권한의위임) ①교통부장관은 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2. 법 제2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